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1.

발의자 : 위성곤 · 박정 · 박재호

김철민 · 김현권 · 설훈

김종민 · 홍문표 · 윤영일

정성호 · 이찬열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, 소상공인 및 개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신청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증명 등 4종의 국세청자료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중이었으나, 2017년 12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에 제공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청자료의 이용 승인이 철회되어 신용보증신청고객들이 관련 증명을 별도로 발급받는 등 절차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, 개인 등 신용보증신청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, 원활한

자금 융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, 나아가 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7조의2).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재단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,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의2(자료 제공의 요청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u><신설></u></p>	<p>제37조의2(자료 제공의 요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재단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,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</p>